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제정) 2021. 2. 15. 규정 제2호

(일부개정) 2022. 5. 4. 규정 제30호

(일부개정) 2023. 4. 6. 규정 제39호

(일부개정) 2024. 5. 28. 규정 제43호

(일부개정) 2026. 3. 3. 규정 제6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정원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제에 관하여는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직제의 개편)** 공단의 기구 및 정원의 조정과 직제의 신설·개편·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구성원)** 공단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 및 직원을 둔다.

**제5조(이사장)**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이사)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감사) 공단에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공단의 업무를 감사하며,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 감사로 한다.

제8조(직원) 직원은 일반직과 시설관리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의 직급은 6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한다.

제9조(직위·직급) ① 공단의 각 팀장은 일반직 6급으로 보한다.

② 팀장의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은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직 7급은 차장, 8급은 대리, 9급은 주임이라 하고, 공단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시설관리직이라 한다.

제10조(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일자가 빠른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임명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기구) ① 공단에 전략경영팀, 안전감사팀, 관광사업팀, 복지사업팀, 임대사업팀을 두며 공단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5. 4., 2024. 5. 28.>

② 공단은 신규사업 추진 및 전략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조직(TF)의 구성, 운영, 성과 평가 및 참여 직원

보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  
6. 3. 3.>

제12조(정원) 공단의 팀별, 직종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사무분장) 공단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사무분장의 조정) ① 팀 단위 소속직원별 사무분장은 해당 팀장이  
정하고, 사무분장 결과를 경영지원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각 팀은 서로 관련 있는 사무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직무수행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파견자 보직) 이사장은 공단사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에게  
공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 부 칙 <규정 제2호, 2021.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30호, 2022. 5.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9호, 2023. 4.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호, 2024. 5.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1호, 2026.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 5. 4., 2024. 5. 28., 2026. 3. 3.>

## 기구표 (제11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3. 4. 6., 2024. 5. 28., 2026. 3. 3.>

## 정원표 (제12조 관련)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직 및 시설관리직					시설관리직
		이사장	6급	7급	8급	9급	
계	64	1	5	4	5	7	42

※ 비상임이사 및 감사,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별표 3] <개정 2022. 5. 4., 2024. 5. 28.>

### 사무분장표 (제13조 관련)

부서명	분장 사무	비 고
<b>이사장</b>	○ 공단업무 총괄	
<b>전략경영팀</b>	○ 조직·인사·노사관리 ○ 예산·결산·회계(계약, 지출, 급여)·재무 ○ 자산·물품 관리 ○ 정책·현안사업 추진 ○ 경영평가 및 공시, 이사회 등 운영 ○ 근태관리, 후생복지, 교육훈련, 직장민방위 등 ○ 전산 및 통신(홈페이지, 그룹웨어, 전산장비, 전화, 네트워크 등) ○ 정보공개, 공인 및 기록물관리 ○ 보안업무, 비상대응 등	
<b>안전감사팀</b>	○ 재난안전관리 총괄 ○ 시설물 유지관리 총괄, 영선기능 ○ 녹색경영 ○ 감사, 법제 ○ 개인정보보호 ○ 윤리·인권 ○ 적극행정	
<b>관광사업팀</b>	○ 관광시설 운영·관리 - 계방산오토캠핑장, 평창자연휴양림, 평창국민여가캠핑장, 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 ○ 부서 운영 - 시설별 활성화 방안 추진, 수입금 관리 -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및 인건비 등 관리 - 안전관리, 운영통계, 환경개선 등	
<b>복지사업팀</b>	○ 복지시설 운영·관리 - 평창공설묘원, 평창장례식장, 진부장례식장 ○ 부서 운영 - 시설별 활성화 방안 추진, 수입금 관리 -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및 인건비 등 관리 - 안전관리, 운영통계, 환경개선 등	
<b>임대사업팀</b>	○ 임대사업 운영 : 대관령휴게소, 행복주택 ○ 대행사업 운영 : 종량제봉투 제작 판매 ○ 부서 운영 - 시설별 활성화 방안 추진, 수입금 관리 -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및 인건비 등 관리 - 안전관리, 운영통계, 환경개선 등	